

법무매거진

‘고법부장관사 폐지’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 ‘인천북부지원·창원가정법원 신설’ 법원설치법 개정안도 통과

사법부 관료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고등법원 부장관사 자리가 내년 2월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2025년 3월에는 인천지법 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이 신설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지난 3월 4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7건을 가결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 3월 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대법원 윤리감사관 ‘개방형 직위화’도 통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고법 재판부에 부장관사를 두도록 규정한 법 제27조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용차량이 지급되는 등 사실상 차관급 대우를 받는 직급 개념으로 운영돼 온 고법 부장관사 승진 제도를 완전히 폐지해 법관들 간의 계층구조 형성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법급 전문법원인 특허법원 재판부에도 부장관사를 두지 않게 된다. 대신 지방법원이나 지원, 1심

전문법원인 가정법원과 가정법원 지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재판부에는 부장관사를 둘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앞으로 부장관사가 아닌 재판부 구성원 중 1명이 재판부의 재판장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고법이나 특허법원 뿐만 아니라 지법과 지원, 가정법원과 그 지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에도 적용된다. 기존의 부장관사와 2명의 배석판사가 아닌 비슷한 경력의 판사 3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대등재판부’를 실질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법사위는 부칙을 통해 법 시행일을 내년 2월 9일로 정하는 동시에 “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고법 부장관사급 이상의 법관에 보임된 법관의 직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뒀다.

이 내용은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 이후 발표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9월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올린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하여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



썸'이란 글을 통해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의 구분 이외에 법관들 간의 계층구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관인사제도의 이원화를 완성하는 한편 내년부터 당장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2018년 2월 정기인사부터 사법연수원 25기 이하 법관에 대한 고법 부장판사 신규 보임을 중단했고, 지난해 2월 정기인사부터는 고법 부장판사 신규 보임을 전면 중단하는 동시에 고법 판사에 대한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빈 자리를 채워왔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 개정 작업이 난항에 빠지면서 직무대리 방식으로 재판장 결원을 보충하는 방식이 계속돼 '비정상적 상시화'가 이어진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법원 윤리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무직인 윤리감사

관은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 등의 법률·감사사무 종사자 △법학교수 등의 경력을 합쳐 10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 중 공모절차를 통해 임용된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윤리감사관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 임용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비롯해 △예비후보자를 포함해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자문·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추가했다. 최근 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직 법관의 정치적인 의사 표명이 늘어나면서 "법관의 정치

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국민적 우려에 따른 것이다. 대선 과정에서의 자문·고문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 내용은 개정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2025년 인천북부지원·창원가정법원 신설

법원설치법 개정안은 오는 2025년 3월 1일 인천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천북부지원은 인천 계양구와 서구, 강화군을 관할하게 된다. 인천시의 경우 지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인천지법이 남쪽에 치우쳐 있다보니 북부 주민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천 계양구와 서구, 강화군 인구를 합치면 91만명이 넘는다.

개정안에는 창원가정법원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마산과 진주, 통영, 밀양, 거창에는 각각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된다. 창원시 인구는 120만명이 넘는데, 현재 서울과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울산, 수원 등 창원보다 인구가 많은 본원 지역에는 모두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는 상태다.

◇ ‘인터넷 감청자료’ 집행 종료 후 법원 승인 얻어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인터넷 회선에 대한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집행이 종료된 후 필요한 전기통신 자료를 선별해 법원에 보관 등의 승인을 청구하고 법원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기관이 법원에 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전기통신 자료는 폐기한 뒤 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수사기록이나 내사사건기록에 첨부해 법원에 송부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18년 8월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감청의 특성상 다른 통신제한조치에 비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매우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감청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한 처리 등을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2016헌마263)에 따른 조치다.

◇ ‘딥페이크’ 처벌 강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가공하는 이른바 ‘딥페이크’(deepfake,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합성한 편집물)를 제작하거나 반포·판매·임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딥페이크를 반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3년 단축’ 적용 범위 확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 개정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의 시행일인 2018년 6월 13일 이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 가운데 개정규정 시행일에 이미 3년 이

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부칙을 수정한 것이다. 개인회생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 복귀와 생산활동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 아동학대 피해아동 형제자매도 응급·임시조치 대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재발방지를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 접수·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련 조치의 주체나 청구권자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동학대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나 피해아동과 함께 살고 있는 아동도 응급조치와 임시조치를 통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아동학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동시에 아동학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례관리가 끝날 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 출입국사범 과태료 면제 가능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에도 통고처분과 같이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업(業)으로 알선·권유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처벌 이외에 법인 등을 처벌하는 한편, 외국인이 미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자격 범위 안에서 근무처를 변경·추가한 경우 외국인 관련 양벌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법상 양벌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출처/법률신문)